## 개정일:2018.02.22. 작성자:심재보 확인자:심재보

## 의학전문대학원학칙

## 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학칙은 가천대학교(이하 '본교'라 한다) 학칙 제5조에 의거 설치하는 의학전문대학원(이하 '대학원'이라 한다)의 교육과정(명칭변경 2015.08.28.) 및 학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교육목적 및 목표) 대학원의 교육목적은 박애, 봉사, 애국의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의료인의 전문적 자질을 갖추고, 사회가 필요로 하며, 의학발전에 기여하는 의과학자를 양성하는 것이다. 이를 실천하기 위해 다음을 교육목표로 하다.
  - 1. 마음이 따뜻한 의사(Attitude)
  - 2. 할 줄 아는 의사(Skill)
  - 3. 문제해결 능력이 있는 의사(Knowledge)
  - 4. 인류에 봉사하는 의사(박애)
  - 5.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의사(봉사)
  - 6. 의과학발전에 기여하는 의사(애국)를 양성하는 것이다.
- 제3조(교육조직) 전문대학원에는 기초의학, 응용기초의학, 임상의학의 교육에 필요한 하부조직을 둔다.

#### 제2장 과정 및 정원

- **제4조**(학위과정) ①대학원에는 의무석사학위과정을 두며, 이 학위과정과 박사과정을 통합한 석·박사통합과정(MD-Ph.D.) 등 '복합학위과정'을 둘 수 있다. (개정 2012.08.10., 2013.05.31)
  - ②석·박사통합과정(MD-Ph.D.)등 복합학위과정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. (개정 2012.08.10., 2013.05.31)
- **제5조**(입학정원, 학과, 학위종별) ①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 및 학과 또는 전 공별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. (개정 2012.08.10, 2013.05.31)

학과	과정	정원	학위종별
의학과	의무석사 과정	40	의무석사 (MD. MMSc.)
의약과	석·박사 통합과정	의무석사 과정 정원에 포함	의과학박사 (MD-Ph.D.)

②석·박사통합과정(MD-Ph.D.)의 정원은 의무석사학위과정 정원 내에서 선발하되, 해당 과정 중 박사학위과정으로 진입 시 일반대학원 정원으로 운영한다. (개정 2012.08.10., 2013.05.31)

## 제3장 수업연한 · 재학년한

- **제6조**(수업연한)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의무석사학위과정은 4년(8학기)으로 하고. 복합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따로 정한다.
- **제7조**(재학년한) ① 대학원의 재학년한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. 단, 휴학기간은 재학년한에 포함되지 않는다.
  - 1. 의무석사학위과정: 6년
  - 2. 복합학위과정 : 별도로 정한다.
  - ② 특별한 사유가 있어 재학년한을 초과한 경우 별도 심의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재학년한을 1년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.
  - ③ 재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자는 대학원에서 수업하여야 할 연한의 1.5배를 초과하여 재학할 수 없다.

### 제4장 학년 · 학기 및 수업일수

- 제8조(학년, 학기의 운영) ① 학년 및 학기의 운영은 본교 학칙의 규정을 따르되 교육과정(명칭변경 2015.08.28.) 운영 상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분기제 또는 학년제로 운영할 수 있다.
  - ② 교육과정(명칭변경 2015.08.28.) 운영 상 필요한 때에는 본교 학칙의 규정에 의한 학기 개시일 전이라도 개강할 수 있다.
  - ③ 복합학위과정 운영은 별도로 정한다.
- 제9조(수업일수)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(매 학기 15주)이상으로 한다.

#### 제5장 입학 및 재입학

- 제10조(입학 및 전형원칙) ① 대학원의 입학(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)시기는 매학기 초 30일 이내로 한다.
  - ② 신입생은 일반전형에 의하여 선발하되,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.
- 제11조(입학지원자격) ① 대학원 입학전형 지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받을 예정인 자
  - 2.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
  - 3. 당해 연도 의학교육입문검사(MEET: Medical Education Eligibility Test) 에 응시하여 일정 성적을 취득한 자로 하며, 선수과목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다.
  - ② 복합학위과정에 지원하는 자의 입학지원 자격은 별도로 정한다.
  - ③ 기타 입학에 필요로 하는 지원 자격은 따로 정한다.
- 제12조(입학전형) ①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은 매 학년도 입시요강에 의한다.
  - ②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학전형위원회 등을 둔다.
  - ③ 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- 제13조(지원 절차) ①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 하여야 한다. 다만, 재입학·편입학에 필요한 서류는 따로 정할 수 있다.
  - 1. 입학 원서(소정양식)
  - 2. 수험료납입증명서(소정양식)
  - 3. 기타 대학원이 지정하는 서류
  - ② 복합학위과정에 지원하는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을 수 있으며, 추가 서류에 대해서는 따로 정할 수 있다.
  - ③ 이미 제출된 입학 지원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- 제14조(재입학) ① 재입학은 본 대학원의 제적자에 대하여 정원의 여석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. 다만, 징계·이중학적 보유 및 재학년 한을 초과하여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없다.
  - ② 재입학은 제적 당시 학년 이하로 하며,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.
  - ③ 재입학자의 교육과정(명칭변경 2015.08.28.) 이수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- 제15조(입학의 취소) ① 입학허가를 받은 후에도 법령의 위반 또는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.

#### 2-3-1~4 제2편 학 칙

② 입학이 취소된 자의 학적은 무효로 하고, 본교에 제출된 서류와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.

#### 제6장 등록・수강 및 휴학・복학・자퇴・제적

- 제16조(등록과 수강) ① 입학생과 재학생은 매학기 소정기일에 대학원이 지정하는 서류 제출과 함께 납입금을 납부하고, 수강신청 등 수학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.
  -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하거나 제적할 수 있다.
- ③ 등록을 한 학생은 학점을 이수할 수 있고, 학위논문 지도를 받을 수 있다 제17조(휴학과 복학) ① 질병· 병역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을 수강할 수 없는 학생은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.
  - ② 휴학기간은 3학기를 초과 할 수 없으며, 연속하여 휴학하는 경우에는 2학기(1년)를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병역의무기간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  - ③ 유급으로 인한 휴학의 경우 휴학기간은 통산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.
  - ④ 휴학생은 휴학사유가 만료된 다음 학기의 등록기간에 소정의 복학원을 제출하고 복학하여야 한다.
  - ⑤ 재입학 및 편입학생의 휴학기간은 입학 이후 잔여 재학 연한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.
  - ⑥임신·출산·육아(만 8세 이하 자녀 양육 시)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이를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단, 임신·출산·육아 휴학기간은 2학기 이내로 하며, 임신·출산·육아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원생은 병원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.(신설 2015.12.29.)
- **제18조**(자퇴학) 자원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부형 또는 보증인 연서로 자퇴원을 대학원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제19조(제적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의학전문대학원장(이하 '대학 원장'이라 한다)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제적한다.
  - 1.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
  - 2. 등록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
  - 3. 재학년한이 경과하여도 수료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자
  - 4.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자

5. 재학기간 중 통산 3회의 유급처분을 받은 자

#### 제7장 교과이수 · 성적 및 학점

- 제20조(수강신청) ① 대학원 학생은 소정의 기간 내에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교무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- ② 수강 신청한 교과목의 취소 또는 변경은 수강신청 변경 기간 내에 하여야 하며, 그 기간 이외에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**제21조**(교육과정(명칭변경 2015.08.28.)) ① 교과목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하고, 선수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.
  - ② 교육과정(명칭변경 2015.08.28.)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- 제22조(학점) ① 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, 학기당 16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. 다만, 총장이 지정하는 교과목은 학기당 32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.
  - ②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학년까지 소정의 등록을 필하고 학점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학년수료를 인정한다.
- 제23조(수료인정) ① 대학원의 수업년한 이상을 등록하고 소정의 학점을 모두 취득한 학생에 한하여 석사학위과정 또는 복합학위과정(M.D-Ph.D)의 수료를 인정한다.
  - ② 대학원의 각 학년 수료인정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
  - 1. 제1학년 40학점 이상
  - 2. 제2학년 80학점 이상
  - 3. 제3학년 120학점 이상
  - 4. 제4학년 160학점 이상
  - ③ 복합학위과정의 수료인정에 필요한 학점은 따로 정한다
- 제24조(성적) ① 성적은 시험·출석·과제·학습참여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며, 교과목에 따라 논문, 연구 보고서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.
  - ② 교과목 수업시간 수의 4분의 3이상 출석하여야 성적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.
  - ③ 성적의 평점평균은 등급으로 평정되는 교과목별 평점의 평균으로 한다.
  - ④ 성적은 교과목별로 다음과 같이 등급으로 한다.

등급	평점	등급	평점
$A^{+}$	4.3	С	2.0
A	4.0	$C^{\scriptscriptstyle{-}}$	1.7
$A^{-}$	3.7	$\mathrm{D}^{\scriptscriptstyle +}$	1.3
$\mathrm{B}^{\scriptscriptstyle{+}}$	3.3	D	1.0
В	3.0	$\mathrm{D}^{\scriptscriptstyle{-}}$	0.7
$\mathrm{B}^{\text{-}}$	2.7	F	0.0
C <sup>+</sup>	23		_

- ④ 대학원은 D<sup>-</sup>이상을 급제로 하며, 등급으로 평정할 수 없는 교과목은 'P' (급제) 또는 'F'(낙제)로 평가하며, 평점평균을 산출할 때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.
- ⑥ 정당한 사유 없이 한 학기 중 수업일수의 4분의 1이상을 결석한 자는 F학점으로 처리한다.
- ⑦ (삭제 2012.08.10)
- 제25조(과정수료) ① 대학원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학년말로 한다.
  - ② 대학원은 총 이수학점의 평점평균이 '2.0'이상이어야 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.

#### 제8장 시험·유급 및 졸업

- 제26조(시험) 시험은 정기시험·추가시험 및 재시험으로 구분한다.
- 제27조(추가시험) ①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자는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교과목 교육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.
  - ② 추가시험은 정기시험 종료 후 2주일 이내에 시행하여야 한다.
  - ③ 추가시험의 성적은 취득성적의 90%까지 인정할 수 있다.
- 제28조(재시험) ① 재시험은 교과목 교육담당교수 또는 의학전문대학원 운영위 원회 회의의 심의결과에 따라 당해 교과목 또는 전 교과목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.
  - ② 재시험으로 취득한 성적은 해당 교과목의 정기시험 성적 중 가장 낮은 성적 이하이여야 한다.
- 제29조(유급)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학기 또는 해당 학년의 유급을 처분할 수 있다.
  - 1. 당해 학기 또는 학년에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교과목이 있는 자
  - 2. 당해 학기 또는 학년에 평점평균이 1.7 미만인 자

- ② 제1항에 의해 유급된 자는 유급된 학기 또는 학년의 전 과목을 재수강하여야 한다.
- 제30조(졸업) 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60학점이상으로 하며, 졸업에 필요한 성적은 누계 평점평균 2.0이상으로 한다.
  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누계 평점평균이 2.0미만인 자는 재학 연한 범위 내에서 학기 혹은 학년 단위로 재수강할 수 있다. 다만, 학생이 추가로 학점을 이수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.
  - ③ 각 과정의 학위를 취득한 학생만이 졸업할 수 있다.
  - ④ 논문지도 및 학위논문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#### 제9장 학위의 종류 및 수여

- 제31조(학위취득 자격) 제30조의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한 학생은 학위취득 자격을 갖는다.
- 제32조(학위종류) 학위의 종류는 제5조(입학정원, 학과, 학위종별)의 표와 같다.
- 제33조(학위수여) ① 학위는 각 과정의 학위취득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대학원장의 인정에 의해 총장이 수여한다.
  - ② 복합학위과정 학위 수여에 대해서는 따로 정할 수 있다.
  - ③ 학위증서는 별지 제1호 내지 제2호 서식과 같다.
- 제34조(의결 및 승인) 학위수여 여부는 의학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한다.
- 제35조(학위수여 시기) 학위수여는 연1회로 하며, 매년 2월에 행한다.
- **제36조**(학위의 취소) 학위를 받은 자가 그 영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의학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.

#### 제10장 특별과정 및 외국인·특별학생

- 제37조(특별과정) ① 학사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특정한 과목 또는 과제의 수강을 희망하는 경우를 위하여 특별과정을 개설할 수 있고, 동 과정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실력고사 또는 면접고사를 실시할 수 있다.
  - ② 특별과정의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고, 연구 실적이 양호한 자에 대하여는 연구실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.
- 제38조(외국인 학생) ① 외국인이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어

사용능력이 수학가능수준에 도달하여야 하며, 별도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야 한다.

- ② 외국인 학생이 수학할 수 있는 과정(학위과정을 포함한다)·전공·정원· 수학기간·교과이수 및 수강료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- ③ 전공분야의 성격상 일정수준 이상의 한국어 사용능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자에게는 별도의 한국어 시험을 부과할 수 있으며, 시험의 수준은 대학원의 학업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실력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내용으로한다. 다만, 국내의 공인 한국어 훈련기관의 수료증 소지자에게는 한국어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.
- 제39조(특별학생) ① 특별학생은 전문대학원 학생이 아니면서 전문대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(명칭변경 2015.08.28.)을 이수하는 자를 말한다.
  - ② 총장은 해외거주 교포 및 외국인 학생으로서 외국의 의과대학을 1년 이상 수료한 자에 한하여 특별학생으로 수학을 허가할 수 있다.
  - ③ 특별학생으로 수학하고자 하는 자는 입학원서, 성적증명서 및 추천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에는 학과시험을 과할 수 있다.
  - ④ 특별학생의 수학년한은 1년으로 하며 특별학생의 교육과정(명칭변경 2015.08.28.)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#### 제11장 장학금·학생연구지원 및 학생자치활동

- 제40조(장학금) 대학원생으로 품행이 방정하고 학력이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급 할 수 있다. 시행에 관련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- 제41조(지급대상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납입금을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.
  - 1.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
  - 2. 재학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
  - 3. 다른 학생에 모범이 되는 자로서 가정이 빈곤한 자
  - 4. 법령이 정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
  - 5. 기타 장학금지급세칙에 정한 자
- 제42조(지급절차) 장학금의 지급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- 제43조(연구지원) ① 장학금지급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사항 이외에 학위과정
  - 의 학생에 대하여는 학술연구진흥을 위하여 연구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.
  - ② 연구보조비의 지급대상자·지급액·지급방법 및 지급정지 기타 필요한 사

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.

- 제44조(학생활동) ① 학생자치활동은 본교의 건학이념과 교훈에 따라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하고, 자율적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  - ② 학생은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기능을 방해하거나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- ③ 학생자치활동에 대하여는 본교 학칙 제8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되, 동 규정 중 '소속대학장'은 '대학원장'으로 한다.

#### 제12장 직제 및 위원회

- 제45조(직제) ① 대학원에 두는 조직은 법인 정관 및 직제규정에 따른다.
  - ② 학과 또는 전공에는 각각 학사업무를 담당하는 주임교수 1인을 둘 수 있다.
- 제46조(의학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) ① 대학원의 운영 및 학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학전문대학원운영위원회(이하 '운영위원회'라 한다)를 둔다.
  - ② 운영위원회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대학원장 및 각 부장과 교직원으로 구성한다.
  - ③ 운영위원회는 대학원장이 소집하고 대학원장이 그 위원장이 된다.
  -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며,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위임할 수 있다.
    - 1. 대학원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    - 2. 입학·수업·학위수여 등에 관한 사항
    - 3. 대학원 장단기 교육계획에 관한 사항
    - 4.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 · 폐지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
    - 5. 대학원 교육과정(명칭변경 2015.08.28.)과 학생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
    - 6.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
  - ⑤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- 제47조(제위원회) ①대학원 학사운영과 교육활동에 관한 대학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.(개정 2018.02.22.)
  - 1. 의학전문대학원 인사위원회

#### 2-3-1~10 제2편 학 칙

- 2. 의학전문대학원 교원업적평가위원회
- 3. 발전위원회
- 4. 교육기획위원회
- 5. 질관리위원회
- 6. 도서정보위원회
- 7. 임상실습위원회
- 8. 통합교육위원회
- 9. 기초의학위원회
- 10. PBL위원회
- 11. (삭제 2013.05.31)
- 12. 국시대책위원회
- 13. 국제협력센터운영위원회
- 14. 연구위원회
- 15. 윤리위원회
- 16. 의무석사논문관리위원회
- 17. 학생지도위원회
- 18. 기숙사운영위원회
- 19. 장학위원회
- 20. (삭제 2013.05.31)
- 21. 건강관리위원회
- 22. 정보위원회
- 23. 석·박사통합과정(MD-Ph.D) 운영위원회
- 24. (삭제 2013.05.31.)
- 25. OSCE(임상수기평가) & CPX(진료항목평가) 위원회 (신설 2013.05.31)
- 26. 의학교육연구위원회 (신설 2013.05.31)
- 27. 환자의사사회교육위원회 (신설 2013.05.31.)
- 28. 학습성과 평가위원회 (신설 2018.02.22.)
- 29. 공간조정위원회 (신설 2018.02.22.)
- ② 제위원회의 기능・구성・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- 제48조(주임교수 및 전체교수회의) ①대학원의 교육발전과 그 계획의 수립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임교수회의와 전체교수회의를 둘수 있다.
  - ② 주임교수회의와 전체교수회의의 기능・구성・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

따로 정할 수 있다.

#### 제13장 학칙 개정 절차

**제49조**(학칙개정) 학칙 개정에 대하여는 본교 학칙 제8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. (개정 2013.05.31)

##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학칙은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통합전 가천의과학대학교 대학원학칙 및 의학전문대학원학사운영규정 등의 규정을 따른다.

##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학칙은 2012년 08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입학정원)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입학정원은 학·석사통합과정으로 입학한학생이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로 진입하는 직전 학년도(2015학년도)까지는 40명으로 하고, 학·석사통합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이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로 진입하는 학년도(2016학년도)부터는 학·석사통합과정에서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로 진입하는 학생수를 포함하여 40명으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학칙은 2013년 05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이 학칙은 2015년 08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이 학칙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이 학칙은 2018년 02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(별지서식 제1호)

# 의무석사학위기

학 위 기

석제 호

성명: O O O 년 월 일생

위 사람은 본교 의학전문대학원 의무석사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하여 의무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이를 인정함.

논문제목:

년 월 일

가천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장 (학위) ○ ○ ○

위의 인정에 의하여 의무석사학위를 수여함.

년 월 일

가천대학교 총장 (학위) 〇 〇

학위등록번호: 가천대(석) - 호

(별지서식 제2호)

# 의과학박사학위기

학 위 기

박 제 호

성명: O O O 년 월 일생

위 사람은 본교 의학전문대학원 의과학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하여 의과학박사의 자격을 갖추었 으므로 이를 인정함.

논문제목:

년 월 일

가천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장 (학위) ○ ○ ○

위의 인정에 의하여 의과학박사학위를 수여함.

년 월 일

가천대학교 총장 (학위) ○ ○ ○

학위등록번호: 가천대(박) - 호